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국고등손실)[제1예비적죄명:업무상횡령·제2예비적죄명: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·업무상횡령[인정된 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국고등손실)]

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7. 20. 2018고합20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

【검 사】배성훈(기소, 공판), 한동훈, 양석조, 김익수, 김가람, 채희만, 박경택(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김수연 외 1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33억 원을 추징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년 9월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국고등손실)의 점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의 점은 각 무죄.

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【이유】

1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